

환경을 생각한다
건강을 생각한다

명예 명예 명예

소음·진동관련 민원, 매년 늘어간다



정홍식

우리는 과거 20~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소음·진동에 포위당하며 살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집계된 환경관련 민원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진정이 해마다 증가하여, '88년에는 '82년보다 2.6배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환경공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차치하고라도 심한 경우 고혈압, 뇌질환, 위궤양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소음·진동의 발생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교통소음, 공장 및 작업장의 소음, 항공기 소음, 기타로 나눠볼 수 있다.

녹색의 전화에 상담을 요청한 소음 사례를 예로 들면, ◦공사현장(APT공사)의 발파폭음으로 인해 잠을 이룰수 없고 집에 균열이 갔다. ◦옆집에서 피아노학원을 차리고 있어 낮에도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차에 확성기를 사용해서 뺑을 팔고 있어 장사를 할수 없다 등이 생활소음으로 상담실에 전화상담을 한 경우이다.

이와같은 예들은 소음공해 규제대상이 되고, 관계행정관청에 민원신청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다음은 발생원에 따라 하나하나 알아보자.

교통소음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은 거의 모두가 크고 작은 도로에 인접해 있다. 작년('90년) 12월 환경처가 전국 7대도시 1백28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도 현황에 따르면(7월~8

월) 밤에는 70%, 낮에는 60% 안팎의 지점이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폐적한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에 자리잡은 서울시내 각급 학교들은 차량통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날씨가 더운 여름 같으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공장 및 작업장의 소음

우리나라의 공장중 대부분은 공단으로 이전을 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일부공장들은 주택지역 및 상업지역에 산재하여 대도시 공해진정 건수의 주된 요인이 된다. '89년 서울시에 공식접수된 4백22 건의 소음·진동 관련 진정 건수중 공장소음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이 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교회등 종교기관·행상·전파상등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정이 교통소음보다 오히려 많다는 사실이다.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하고, 소음·진동 뿐만 아니라 매연·폐수 배출등 오염물질등을 복합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도 행정지도 외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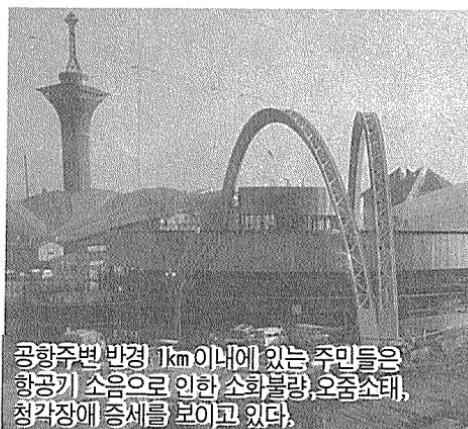
주민들도 공해공장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외면당하기 일쑤이고 소음은 특히 발생하는 곳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주민들이 쉽게 단합할 수 없는 약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공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들은 두통을 유발하며 불안감을 갖게하는 원인이 된다.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의 특징은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소음진동 뿐만 아니라 이착륙시 배출가스로 인한 매연도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

부천시 고강동·오쇠동, 경기도 김포읍, 강서구 공항동등 공항주변 반경 1km이내에



소음, 진동의
발생원은 크게
교통소음, 공장
및 작업장 소음,
항공기 소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있는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소화불량, 오줌소태, 청각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인 WE-CPNL 90데시벨을 넘는 지역으로 사람이나 살아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88년 서울대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 중 26%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있고,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말소리를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사실상 근원적 방지가 불가능하고, 대책마련에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대책마련에 있어서 미봉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주도로 항공기 소음측정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정확히 실태를 조사하고 그 피해정도(육체적·정신적)

를 산출해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에 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항공기 소음권에 있는 신월3동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 '72년 서울 도심지역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지역이었고 부천시 고강동 일대는 비행기 소음 피해가 예정된 지역임에도 택지를 개발해 수만명을 입주시시키는 등의 주택정책 부재마저 드러냈다.

소음도 인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공해이므로 원인을 철저히 없애고 저감시켜야 하며, 정부 또한 소음·진동 공해를 발생시키는 업체를 규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을 개발할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 검토해야 하겠다. 74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